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9판)(‘21.11.15. 시행)을 오미크론 대책(‘22.1.14)에 따라 수정·보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0판)(‘22.2.10. 시행)을 기본으로 작성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각 개별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10판)

2022. 2.



보건복지부

목 차

I. 개 요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3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3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5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6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8
5. 접촉의 최소화	9
6. 시설 휴관(원) 시 조치사항	9
7. 의심·확진자 발견 시 조치사항	10
8. 행정사항	12
III. 지자체 협조사항	14
IV.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업무연속성 계획 [BCP] 작성 가이드라인	15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 행동수칙	2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	2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관리자 방역수칙	32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33
5.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36
6. 사회복지시설 소독방법	38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환기 가이드라인	46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52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	53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54
11. 예방접종 유효기간 및 이력 확인 방법	55
12.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	59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관련 안내 사항	61
14.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	62
15.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내용	63
16.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64

▷ 서식 ◁

1. (서식1-1) 시설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64
2. (서식1-2) 시설 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65
3. (서식2) 접촉자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66
4. (서식3-1)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67
5. (서식3-2)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68
6. (서식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	69
7.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70
8. (서식6) 소독 실시 대장 양식	71
9. (서식7) 환기 실시 대장 양식	72

▷ 참고 ◁

1. 보건복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73
-------------------------------	----

I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11.1)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방역관리 방향 제시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오미크론 확산 전망에 따른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중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2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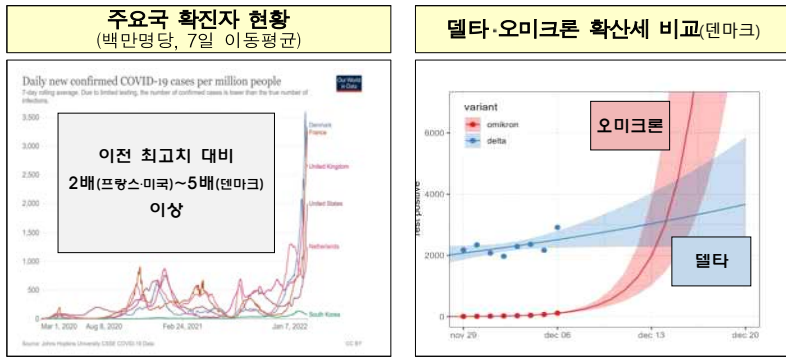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시설 운영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 **표면접촉**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을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 **에어로졸 생성 기술** :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및 영향력

- (전파력) 델타 대비 전파력 2~3배 높고, 확진자 더블링에 2일 이내 소요(영국)



- (백신효과) 면역회피로 돌파감염 위험 증가, 중증·사망예방 효과는 소폭 감소
- 3차 접종시 감염예방 효과 확인되나 접종 3개월 후 뚜렷하게 감소
- (영향력) 높은 전파력이 낮은 중증도를 상쇄하며, 단기간에 대규모 급증(surge) 가능
- 방역·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 초래, 새로운 위기 국면 돌입 가능 ⇒ 환자 급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비상 의료대응 체계를 마련 필요
- 확진자·접촉자 증가에 따른 대규모 격리 및 치료로 인한 사회 필수기능 유지 및 사업장 운영 지장 초래 ⇒ 의료·교육·돌봄·소방·치안·교통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업무의 중단과 국가 경제활동의 막대한 차질 발생 우려되므로 각 분야별 철저한 대응계획 수립 필요

2. 기본방향

- ①철저한 방역 조치 하,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원칙,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범위 조정
-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시설운영 정상화, 미접종 종사자 등 관리 강화

- 종사자·미접종 입소자 등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화
- 신규 입소자·이용자 진단검사 후 입소·이용

-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이행(22.2월)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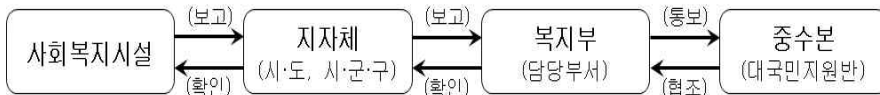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관리체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하여 근무자 등 출입자 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유지토록 함
 - * 방역관리자(시설내 방역관리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 시설 내 방역관리자는 YOUTUBE에 “방역관리자”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
 - 종사자·입소자·이용자·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 간편 전화(안심콜)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대응 체계) 복지부(중수부 및 사업부서)와 지자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 감염관리책임자 :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파악 등 수행

** 시설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방역관리자로 활동 가능

-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및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시설은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 (방역조치 점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 지자체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종사자 **감염병 모니터링 및 방역 수칙 교육 결과***를 소관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교육 실시 결과 포함(지침 시행시 1회, 이후 신규 직원 대상)

** 지자체에 따라 보고의 형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소관 시설 전체에 지침을 포함하여 공문 등 방법으로 안내할 것

- (지자체) **시설 운영 재개 또는 운영 범위·대상이 확대될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점검한 후 운영 재개**

○ (운영 재개 등)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 사전 조치 신속 시행(지자체 시설)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시설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관련 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실시 등

-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대상 등 결정**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서비스) 특성에 맞게 세부사항 결정

-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법인 소재지 지자체는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외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관리**

* 지자체간 역할정립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 협의사항을 우선하되, 원만한 협의회가 되지 않을 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입소자·이용자,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관리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서식 6, 7)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3회 이상 자주, 매회 10분 이상)
-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 마스크 착용,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충분히 비치
-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방대본, '22.1.24)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않기

<상황별 권고 마스크(방대본, '22.1.24)>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밀시설(밀집·밀접·밀폐)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최소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 명부작성)

- 단, 시설·장비 보수,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착용 및 증상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 시설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및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1)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 (2)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¹⁾⁺⁽²⁾: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 (3)**입소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받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및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름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10-3판],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21.9.24.)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 시 출석 인정

-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면회) 접촉면회 금지, 비접촉 면회 실시로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

○ 중증, 외상 등으로 비접촉 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면회 실시

○ 단, 입소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이라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 또는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권고,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 발열 등 증상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 방역관리 실시

☐ (외출·외박) 필수 병원 진료 외 원칙적 외출·외박 금지

○ 복귀 후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확인 등 모니터링 지속

☐ (프로그램 등 운영)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 운영

○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여 가능(외부강사 제공불가)

-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권장함

○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 실시

☐ (이용시설 내 취식) 테이블 간 적정거리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참고 : 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 >

구분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2차접종 후 14일~180일 ¹⁾ , 3차접종(부스터) ²⁾ 후 즉시
코로나19 음성(陰性, negative)확인	PCR 음성확인서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1)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 없음

2)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는 유효기간 없음

5. 접촉의 최소화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 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6.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안부전화, 도시락 등) 마련,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20. 2. 21. 既 배포)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1(2020.02.21.) 既 시행

7. 의심·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 (대응원칙) ①의심증상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검사, ②신속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

- 의심·확진자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대응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대응함
- 종사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시설 내 감염병 관리자와 상담 등 시설 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고려
 - ※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PCR 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 실시 검토 및 준비
 - *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 결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소자의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환자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시설 내 확진자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여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

- ※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 ※ 입소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시설내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 ※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 사전에 지정한 임시격리장소 및 방역관리자(감염병관리자)를 활용하여 기관 내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내
 - 소독제 종류 및 소독범위, 환기 시간, 폐쇄 범위 등을 관련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마련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변경된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구 분		현 행	조정 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 됨

※ 예방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수동감시 :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 (공통)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예시)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 각 소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응 요령을 개정하고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

의심환자	<p>(접수)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또는 입소자 발생 시, 즉시 시설내 감염병 관리자 보건소에 전화 신고</p> <p>(검사) 기관 내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p> <p>(격리) 의사환자(종사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결과는 시설내 감염병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의사환자(입주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시설내 격리공간에 격리</p> <p>(접촉자) 의사환자와 개인보호구 없이 접촉한 사람은 의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근 및 동반식사 지양</p> <p>(소독) 의사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p>
확진환자	<p>(공지) 시설에서 확진환자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시설 내 모든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야 함(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p> <p>(접촉자 파악) 확진 환자와 접촉(마스크를 벗고 대화 혹은 식사)한 사람을 파악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재택근무, 격리 등 비상근무로 전환, 필요시 보건당국에 제출</p>

8. 행정사항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20.1.30. 시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가 **코로나19** 관련한 유급휴가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시도의 파견인력 총괄부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에 대체인력 요청가능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백신후가** 실시 관련

-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 원칙**
 - 시설 여건에 따라 필요시 예외적으로 병가/연차유급휴가 등도 활용 가능
- 각 지자체는 관내 시설별로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사전에 수립 하도록 안내 및 지원 실시
 - 입소자 접종 시 이상증상 발현 모니터링 가능토록 종사자 접종시기 조율
 - 접종일 분산, 근무시간 조정, 유휴인력 활용 등을 통해 접종 및 백신후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전 강구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백 우려 시에는 시기·지역·직무별 소요를 사전에 협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체인력 요청 등 활용
- 지자체는 접종 기간 중 서비스 제공 이상 유무 모니터링 실시
 - * (시설→시·군·구→시·도→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IV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필요
- (감염관리책임자)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을 지정토록 조치 필요(방역관리자 역할에 대해 교육콘텐츠를 통해 숙지)
- (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격리시설 마련)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내 또는 외부 연수원 등 유희공간을 활용한 격리공간(1인실 원칙) 사전 준비 필요

- (발열체크 등 확인)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기록하도록 조치 필요
-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
-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활용 기본방향

-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의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시설이 기 조직하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비 감염병 관리·비상대응팀** 등 유사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I.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1. 개요

- (정의)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 체계
- (작성 배경)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요양시설 등 구성원 확산·격리가 급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상상황 대비 필요

2. 구성 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성 - 팀별·개인별 역할 규정
②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 반드시 지속해서 수행해야 하는 핵심업무를 선정 - 업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BCP 체계화 - 계획 실행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혼란 최소화
③ 가용자원 현황 파악 및 필요자원 구비	- 요양시설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현황 파악 - 코호트 격리시 공단·지자체 추가 지원에 대한 사전 파악
④ 소통 체계 구축	- 요양시설 감염 비상대응 협의체 등을 통한 소통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⑤ 비상 상황별 시설 운영 방안 마련	- 인력 부족 시 핵심업무 지속 방안 마련 - 필수 종사자 확진시 대체 인력 등 확보 방안 체계화
⑥ 회복 등 조치	- 기존 비상조직 체계를 복구활동 조직으로 전환 - 기타 BCP에 담겨야 할 사항 포함

※ 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름

3. 실행 시기

-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폭증하여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시점
- * 방역당국의 작동 요청시, 혹은 시설 내 입소자·종사자 다수 감염 등으로 정상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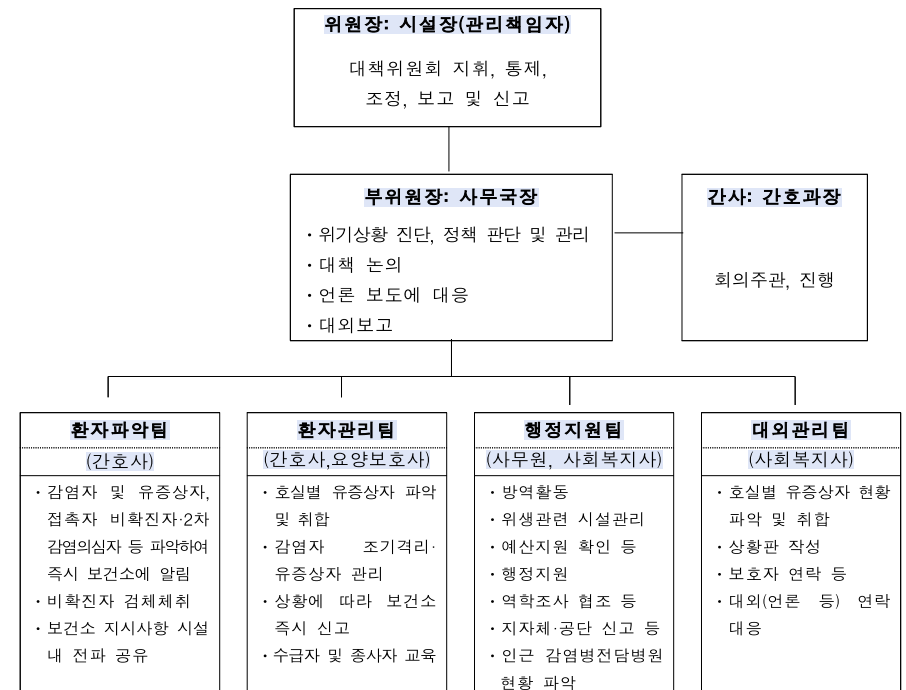
II. 업무연속성계획 준비

1 시설별 비상 대응체계 정비

- ◆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 통제를 위한 감염병 관리·비상대응팀 구성
- ◆ 시설에서 기 구성·운영 중인 코로나19 비상대응조직을 활용하거나 신규 조직 구성 가능

-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팀·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 시설별 비상 대응체계 및 역할 (예시) >



※ 대응팀은 해당 시설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2 핵심업무 선정 및 가용자원 확보 등

- ◆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핵심업무를 선별하여 우선순위 업무를 설정하고, 비필수 혹은 단기 중단 가능 업무는 축소
- ◆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가용자원 파악 및 필요자원 비축

1. 핵심업무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중 필수 기능 선별 및 우선 순위 결정
- 입소자 및 종사자 감염 규모, 가용 자원 상황 등에 따라 비필수 업무부터 단계적 축소 또는 중단
 - * 업무 구분(예시)
 - (필수) ①건강 및 간호관리, ②신체활동 지원, ③급식, ④시설환경 관리
 - (비필수) ①기능회복 훈련, ②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2. 가용자원 파악 및 필요자원 비축

-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 예산, 방역 물품* 등을 파악하여 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체온계, 소독제, 진단검사키트 등
- 특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므로 주 단위 소모량을 파악하여 각 시설별 필요 비축량을 설정하여 관리

3. 감염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방안 마련

-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확진자 관리 방안 등 계획 수립
 - 방역 당국 지침 변경 시 변경 내용 반영하여 신속하게 계획 수정

<방역조치 및 선제검사 지침(안)>

○ 방역 조치

현행	- 접촉면회 잠정 중단(사전예약 비접촉방문면회는 유지)
	- 백신 미접종자 접촉업무 배제
	- 외부인 출입 금지(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
	- 외래 진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소자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권고

○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현행	- 주 2회 PCR 검사 + 주 2회 신속항원검사
----	-----------------------------

○ 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 미접종 입소자 주1회 PCR 검사
	- (요양시설, 공생)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입소시 PCR 검사(2회) 및 일정 기간 격리 후 입소
	* 1차 PCR 검사(1일차) → 격리 대기(2일차) → 2차 PCR 검사(3일차) → 2차 PCR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대기 후 입소(4일차)

<확진자 관리 지침(안)>

현행	-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 확진자-비확진자 분리 등 동일집단 격리 관리 및 방역지원 제공
	* (방역지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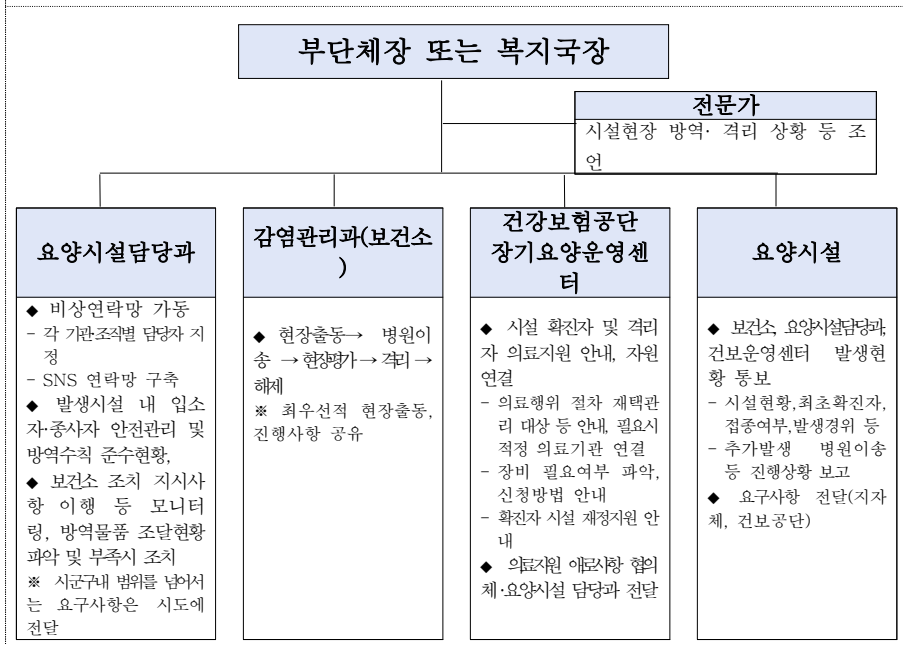
※ 상기 방역조치 등 지침(안) 및 확진자 관리 지침(안)은 추후 변동 가능

3 연락망 구축

- ◆ 조직 내·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 ◆ 지자체별 요양시설 감염 비상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요양시설 감염 발생 시 지역 내 관련기관 공조를 통해 원활한 감염병 대응 지원

- 지역 내 집단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해 지역 내 관련기관의 공조로 원활한 감염병 대응 지원을 위해 시군구별 요양시설 감염 비상대응 협의체 운영 중
-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체 구성원 중 지자체 공무원 또는 요양시설장 대표 등을 통해 협의체에 상황 전파
- 협의체를 통해 시설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원 필요사항 및 운영상 애로사항 전달

« 참고: 요양시설 감염 비상대응 협의체 구성 및 역할 »



4 확진자 발생 시설 초등 대응 담당관 지원

- 확진자 발생 시설별로 요양시설 담당 부서(혹은 주변 부서) 팀장급 1인을 초등 대응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2~3일간 시설 내 감염 관련 초등 대응 지원*

*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초기에 현장 조사, 방역물품 조달,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 지정 등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초등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주체에 협조 요청 등 업무 수행

<초등 대응 담당관 업무 수행 시나리오(예시)>

- 1일차 : A요양시설 확진자 발생사실 인지 → 보건소, 시군구 담당부서, 건보운영센터 통보
→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팀장을 A요양시설에 대한 초등 대응 담당관으로 지정
- 2일차 : 1) 발생 후 1일 경과에도 불구, 보건소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이 불가하다는 내용 접수 → ○○○팀장(담당관)이 보건소에 연락하여 즉시 조치 협조 요청
- 2) 관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병상 부족, 확진자 전원 경증·무증상으로 시설 내 확진자 관리 결정하였으나, A요양시설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사전에 지정 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여, 보건소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청
- 3일차 : A요양시설에서 방호복 및 산소발생기 필요하여 지원 방법 문의 → 방호복은 보건소, 산소발생기는 건보공단 운영센터 연결을 통해 지원·안내 협조 요청

Ⅲ.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운영 지속

- ◆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격리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핵심인력 업무 진행 계획 등 사전 마련

- 단계별 기관 자체 비상 인력 운영계획 수립

- 시설 내 기존 인력 활용 및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등 계획 수립
- * 3단계 인력활용 방안의 경우 1~2단계로 파견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임
- 종사자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대비 1, 2차 직무 대행자 지정

<인력 운영 지침(안)>

코로나19 확산추이 및 시설내 종사자 현황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제도를 우선 활용 후 필요 시 2단계 조치

□ (1단계) 중수본 확보인력 활용

-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등 돌봄을 위한 **인력부족이 발생**한 경우 **중수본 파견인력 요청·대응**
- **(파견절차) (코호트시설)**시군구를 거쳐 시도별 전담팀에 파견인력 요청 → **(시도 파견인력 전담팀)**파견 필요성 검토 후 중수본 파견 협의 → **(중수본)** 파견요청 및 필요인력 승인 여부 검토 → **(승인시)** 시·도 파견인력 전담팀에 파견규모 통보 및 파견 대기인력 활용 파견 개시 → **(코호트시설)**파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대행 및 근태관리(시·도 전담팀에 제출)
 - * 파견인력은 시·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코호트시설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관리
 - 시·군·구 및 시·도는 요양시설의 파견인력 요청시 신속대응을 위해 절차 및 서식 등 사전 안내 필요
 - 인력풀 강화를 위해 관내 요양보호사 대상 개인별 파견신청 안내
 - *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에 개인별로 신청
- **(파견기간)** 기본 2주 + 코호트 해제시까지 **연장 가능**(2주 단위)
- **(파견인력 보수)** 중수본에서 국비로 인건비* 전액 지원
 - * (2주 파견(10일근무)시 요양보호사 수당수준 예시) 약 186만원(**기본수당 일 8만원 + 위험수당 일 5만원 + 특별수당 일 4만원 등**), 교대근무상황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수당액 추가될 수 있음

□ (2단계) 지자체 자체인력풀 확보 활용

- **(시·도)**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에서 **사회서비스원** 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양성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인력풀 구성** 후 필요시 해당 시·도 파견인력 전담팀에 연계
- **(공단 운영센터(시·군·구))** 방문요양기관에 등록된 **유휴 요양보호사** 중 코호트 격리 시설 **파견희망 요양보호사 인력풀 구성·연계**

- **(파견절차)** 중수본에서 직접 파견조치(1단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 하되, 파견절차는 1단계와 동일
 - 시·도 또는 공단 운영센터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인력풀의 인력**을 해당 시·도 파견인력 전담팀에 연계, 중수본 승인 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요양 시설에 근무조치 가능
 - * 근무조치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시·도전담팀 및 중수본에 제출하여 사후 파견처리도 가능
- **(파견인력 보수)** 중수본 인력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중수본에서 국비로 인건비* 전액 지원
 - 이 경우 시·도에서는 타 사업의 인건비와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2주 파견(10일근무)시 요양보호사 수당수준 예시) 약 186만원(**기본수당 일 8만원 + 위험수당 일 5만원 + 특별수당 일 4만원 등**), 교대근무상황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수당액 추가될 수 있음

3. 회복 등 조치

-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기존 비상조직 체계를 복구 활동 조직으로 전환
- 복구에 필요한 자원, 비용 등을 파악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자원 배정
- 보건소, 요양시설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에 복구 상황 보고

참고 1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시 고려사항 [출처 : WHO]

고려 요소	BCP 가동 전	BCP 가동 중	BCP 가동 후
거버넌스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 및 취약시설 파악을 위한 사용 가능 자원 평가 비상대응팀 계획 및 감독 팀 구성 BCP 계획 마련 및 시뮬레이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P 계획 활성화 BCP 조직 계획 실행에 대한 감독 제공 사전 정상화 시 계획 비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P 실행에 대한 평가 구성 필요시 BCP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대한 감독 제공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피드백 제공
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및 배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P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위한 지표 수립 BCP 가동 진행상황 정기적인 상황보고서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훈과 모범 사례를 문서화 및 배포 BCP 가동 중 개선 사항 추적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교육 계획 적절한 인센티브 접근방식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 가능한 직원 배치 (예: 신규 교육자 퇴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 직원 참여 평가
필수용품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P 가동을 위한 필수용품 공급업체 사전 분류 및 마련 재고파악 공급/유통망 관리 담당자 추가 교육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각 부서 및 추가 공급 소진시, 대체용품 수급 방문객 및 외부출입자 대비용품 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파악 및 마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추가 시설/ 공간 검토 및 마련 시설/공간의 위치 고려 (예: 의심환자 격리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에 따라 추가 공간 설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데이트된 계획에서 현재 기반 시설 반영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P 가동을 위한 가용 재정 확보 및 마련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P 가동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평가 및 수정을 위한 자금 및 기타 자원 제공 계획
의사소통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비상 시 소통 구축을 위한 사용가능 플랫폼 서비스 검토 관계기관 등과의 참여 소통 서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연락망 체계 가동 실행 시 관계기관 참여 서비스 연속성 및 활용을 위한 메시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드백 및 환류 (관계기관 참여)
필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업무 중 필수 서비스 제공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시행 (예: 원격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보완 프로세스와 일상적 기능 충돌 방지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발생 가능한 보안 경고 파악 보안조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보안 문제 해결 위한 추가 보안기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보안 조치 업데이트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특별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형평성에 대한 모범 사례 및 교훈 포함

참고 2 요양시설 BCP 단계별 활동내역

	구분	단 계	활동 내역(예)
가동 준비 단계	1단계	우선순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 연락망 구축 및 소통 보유 자원 현황 파악 기존 인력 보존 노력 핵심 업무 및 우선순위 업무 선별 (요양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 순서 설정)
	2단계	자원 (인력, 물자 등) 배치조정 및 시행 전 고려사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모색 인력, 자원, 시설, 감염관리 등 계획 실행을 위한 점검 축소 혹은 중단업무 지정으로 인력 재배치 계획 및 물자 확보 핵심업무 중심으로 개편 및 상세 계획 수립
비상 시행 단계	3단계	업무연속성 계획 시행 (비상운영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따른 핵심 업무연속성계획 가동 비상계획 가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대응 등
	4단계	평가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가동 계획을 얼마나, 어떻게 유지할지 가동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 수정 계획 반영
복구 단계	5단계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복구 작업을 위한 활동

참고 3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 (예시)

주요 내용	완료	진행	미착수
1. 기관 내 감염확산 방지 조치			
감염병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평시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예방 조치를 마련하였는가?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			
접촉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			
개인과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대응체계			
비상 대비 조직을 구성하였는가? (전담반 구성 여부)			
- 각 조직과 팀, 구성원의 개별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시 신속하게 자문해 줄 보건의료인력은 확보하였는가? (내부 : 산업보건의, 산업간호사 등)			
- 내부 의료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부에 전담 자문인력을 확보하였는가?			
3. 핵심업무 지속계획 수립			
기관별 핵심업무를 선정하였는가?			
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전 고려사항은 검토하였는가?			
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방안은 마련하였는가?			
- 재택근무, 탄력근무, 대체근무지 지정 등 비상 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입하였는가?			
-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비상 시 대체조편성 등 업무수행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 인력 부족시 대체 방안 혹은 추가 확보방안은 고려되었는가?			
- 격리 또는 치료 후 복귀자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는 파악하였는가?			
- 보유물자의 비축분은 별도 고려를 하였는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은 파악하였는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은 관리하고 있는가?			
4. 연락망 구축 및 소통			
조직 내·외에 비상연락망은 마련하였는가?			
비상 시 가동가능한 소통망을 마련하고 가동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가?			
직원을 대상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중단 및 축소 업무와 관련한 외부 소통계획을 마련하였는가?			
5. 복구 및 사후조치			
일반 사업 복구를 위한 절차는 마련하였는가?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0대 수칙

1.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합니다.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를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세요.
8.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을 확인하세요.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 고위험군 수칙

-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가능하면 집에 머무릅니다.
 2.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3. 기저질환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합니다.

□ 유증상자 10대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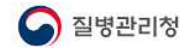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쉽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손 쉬운 방법

올바른 손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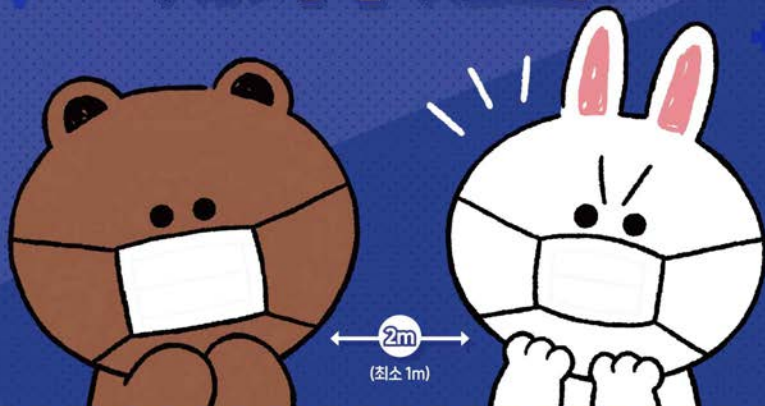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올바른 손씻기 6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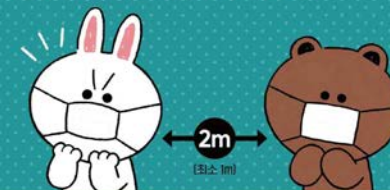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입과 코를 가려 **마스크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하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직장 동료, 함께 사는 가족 외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LINE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하기입과 코를 가려 **마스크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직장 동료, 함께 사는
가족 외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LINE

2021.04.30 질병관리청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방역관리자편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 흐르는 물에 자주 손 씻기
- 공용물품 자제하고 환기, 소독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하고 방역수칙 안내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작성하기

하루 3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소독하기

공용물품 제공하지 않고, 손 씻을 공간·손소독제 마련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맞춰 이용인원 관리하기

거리두기 단계 인 이상 출입 불가

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문의는 가까운 보건소나 ☎ 1339로 전화주세요

2021.4.28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

주의해야 할 경우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안내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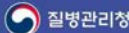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2021.05.2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0판 부록3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 식사하는 혼자서 하기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공통으로 사용 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 건강 수칙 지키기**
 -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씻기·손소독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전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됨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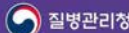
-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 담당보건소
○ 담당자
○ 긴급연락처


2021.05.24.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0판 부록4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 특히, 노인, 임신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 피하기
 - * 가능한 한 노인, 임신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
 -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 가족 또는 동거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카보트, 침대 옆 테이블 등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리기**
 -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 담당보건소
○ 담당자
○ 긴급연락처

코로나19 의사 환자가 이용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소독 전]

1.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는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2.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는다.
3.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4.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5. (환기)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한다.

[청소·소독]

1.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바닥)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소독 구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한다.
3.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형검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세탁)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섬유세탁용 살균제를 고온에서 사용 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로 사용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고,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6.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7.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8. (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부록13)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청소·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소독 전]

1.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는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2.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는다.
3.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4.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5. (환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한다.

[청소·소독]

1. (일상 청소) 자주 만지지 않는 표면과 물건은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3.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형검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6.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7. (개인보호구 탈의)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청소·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소독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비교		
사업장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소독 계획	소독범위 계획 수립	환자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범위 계획 수립
소독 교육	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
소독제	·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 (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	
자주 사용하는 표면	·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 ·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소독 범위	-	·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 (바닥 소독) 바닥 소독 · (세탁) 온수 세탁
주의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니터링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소독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환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한다. (소독제 준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희석액을 준비한다. * 1,000 ppm 희석액 : 빈 생수통 1,000mL에 20mL의 원액을 붓고 냉수를 1,0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주의사항) <div> <p>▶ 소독제 희석 시 냉수 사용하기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효과를 떨어트림)</p> <p>▶ 다른 가정용 세제 및 소독제와 혼합 사용하지 않기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p> <p>▶ 희석한 소독제는 하루 내에 사용하고 남은 소독제는 폐기하기</p> <p>▶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기하기</p> <p>▶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p> <p>▶ 희석액이 묻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고,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15분 이상 행구고 의사와 상담</p> </div>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헹겜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1분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금속, 양모, 나일론, 실크, 염색 된 직물 및 페인트 표면에 사용 금지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 (개인보호구 탈의)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샤워 및 환복)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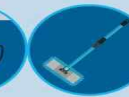
준비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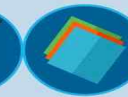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타월)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3/9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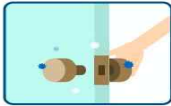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4/9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5/9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6/9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찬물 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7/9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8/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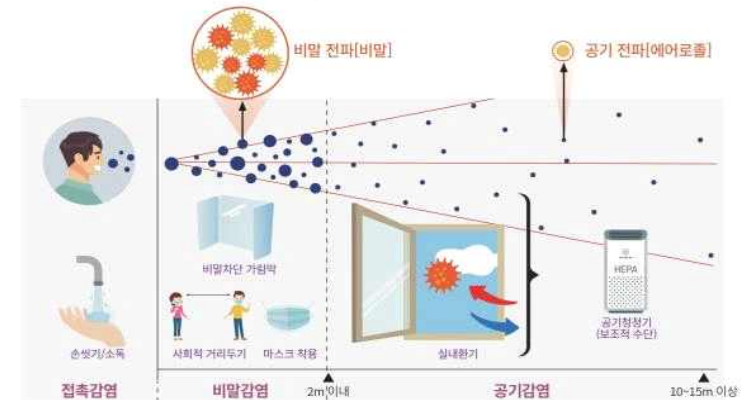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입자 확산특성과 예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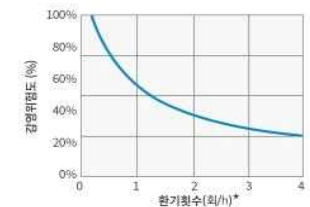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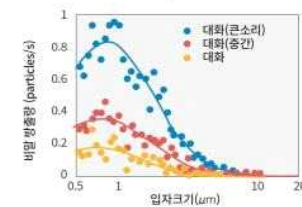
| 비말입자 크기별 특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시간 |

- 5 μ 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 μ m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가능
- 코로나19는 공기중 3시간,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가능(출처:NEJM, 2000)
 - 접촉 및 비말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이 유효한 수단
 - 건물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 수단



| 활동량에 따른 비말방출량 및 환기에 의한 감염위험도 변화 |

-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바이러스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체육시설 및 카페 등과 같이 호흡량이 많은 시설은 감염위험도가 높음
- 환기량*(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이 커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의 자연환기시(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회 환기횟수 확보) 오염물질 농도 및 감염위험도 1/3로 감소



*환기량은 외부공기가 실내에 유입·유출되는 양으로, 환기횟수 1회/h는 1시간에 실내체적 만큼 유입·유출되는 환기량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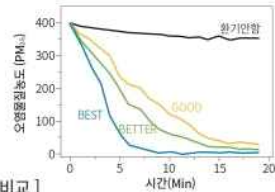
2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자연환기 방식별 환기효과 비교]



| 중복지도 형태의 건물(학원 등)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조건을 유지하고, 자연환기는 동시에 실시!

- 출입문 상시 개방시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되, 자연환기시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



[학원 수업중 자연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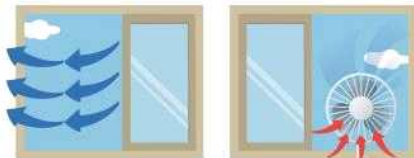
[학원 쉬는시간 자연환기 방법]

| 환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등을 활용한 환기량 증대방법 |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1개인 경우 환기방법]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2개인 경우 환기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건물 유형별 환기가이드라인

3

1.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자연환기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기질을 청정화하고, 청정공기를 실내로 유입하여 환기
- 환기할 필요성을 판단하고, 환기가 될 때까지 환기를 계속 실시
- 환기방법이 불분명할 때는 관리사무소에 문의



2. 건물 유형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기방법

- 환기방법을 잘 알고있음을 확인하고, 환기방법을 잘 알고, 환기방법을 잘 알고, 환기방법을 잘 알고
- 환기방법을 잘 알고있음을 확인하고, 환기방법을 잘 알고, 환기방법을 잘 알고, 환기방법을 잘 알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

4

|(내부순환모드 저장/외기도입량 100% 및 전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고 |

-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카페, 콜센터 등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 내부순환모드 저장/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화



-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용기모를 평가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방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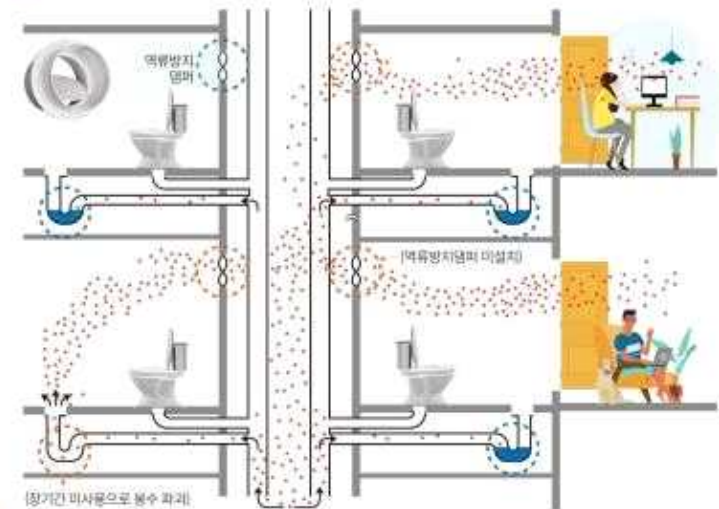
|(실내공간에서 음압형성시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가능 |

- 연돌연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되어 오염물질 유입가능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 및 레인지후드 가동시 자연환기 병행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 중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설비점검 |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 설치
- 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 가동
- 화장실 설비배관내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설 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용기모를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확진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결과 확인된 대상자

붙임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SARS-CoV-2)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에 속함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말(호흡기 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일 (평균 5~7일)
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 치료 : 증상에 따른 수액공급, 해열제, 진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계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함
관리	<p><환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p><접촉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약처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올바른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2021.12.10.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간격 18세 이상 전 국민 '3개월' 단축

코로나19 중증 예방, 고령층 보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대상군	현행	변경 후
60세 이상		
18~59세 고위험군	① 감염병관리실입소 종사자 ② 입원환자 간호인력 종사자 ③ 의료기관 응급실 입원환자 종사자 ④ 기타 고위험군	4개월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3개월
안전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①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② 당일 접종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2021.12.17. 질병관리청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2022.1.3.부터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은?

-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 인정
- 3차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 인정

추가접종에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1년 7월 7일에 2차접종했다면,
2022년 1월 3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됨

예시) 10월 1일에 3차접종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됨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2차접종 후 경과날짜 확인이 쉬운 COOV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COOV앱(전자증명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유효기간 만료 시, COOV앱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경과 여부, 3차접종 여부 확인 (별도 유효기간 표시 없음)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버서 알림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링크)에서도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 가능

유효기간 만료 전, 3차접종을 받아
예방접종 증명 효력을 유지하세요!

○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구 분		증명서 종류	확인내용
2차 접종 완료자/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	① 전자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까지 *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요
	②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③ 예방접종 스티커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PCR 검사 결과		
	① PCR 음성확인 문자 (2월말까지 한시 적용)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② 종이 증명서(PCR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①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② 전자 증명서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돌파감염자 포함)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② 전자 증명서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예 외 적 용	만 18세 이하 청소년	① 신분증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연령) 나이(18세 초과 여부)
	임상시험참여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예방접 종금기자/4-1판 정자/이상 반응 입원치료자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② 전자 증명서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② 전자 증명서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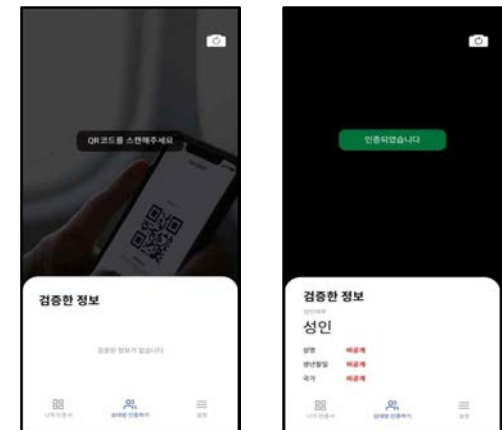
예방접종자(1·2차)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설의 방역관리자 등 현장책임자는 이를 확인

1. 전자증명서(COO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 발급: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설치



-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증명서를 통한 확인

▶ 발급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21.7.1 ~)



3. 예방접종스티커

▶ 발급: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증빙정보가 담긴 스티커 출력→ 신분증에 부착 ('21.7.1 ~)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시안>



Q.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
-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21.4.14~)
-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21.6월 예정)

붙임 12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

1. 개인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운영시간에 맞추어 방문, 선별진료소 방문 전까지는 자택 (검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 격리
- 보건소 방문 시 자가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유전자검사(PCR) 실시
- 검사 후 즉시 자택으로 이동하고, 유전자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유지

▶ 주의사항

- ① 이동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이동 수단을 활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 ② 자가검사에 사용된 물품(장갑, 면봉, 검사키트 등)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함
-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제품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

○ 자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보건소 신고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불필요
- 단, 임상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음성이라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검사(PCR) 실시

2. 시설(기관, 단체 등)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검사대상자) 검사자는 기관에서 지정한 방역관리자에게 양성결과를 즉시 알리고, 이후 절차는 방역관리자의 조치·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보건소)로 방문

- ▶ 보건소 방문 시 자가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유전자검사(PCR) 실시
- ▶ 검사 후 즉시 자택으로 이동하고, 확진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유지

▶ 주의사항

- ① 이동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이동 수단을 활용(대중교통 이용 자제)
- ② 자가검사에 사용된 물품(장갑, 면봉, 검사키트 등)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함
-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제품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

- (방역관리자) 양성자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지도·안내

- ▶ 자가검사 양성자를 유전자 검사 전까지 기관 내 격리 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및 업무 배제 등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함
- ▶ 시설 내 이동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 방역관리자는 자가검사 양성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고

- ▶ 자가검사 양성자와 접촉한 주변인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호흡기 증상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유전자검사(PCR) 실시하도록 조치

○ 자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보건소 신고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불필요
- 단, 임상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음성이라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하도록 함

3. 보건소

- (검사) 자가검사 양성자가 방문 시, 무증상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속하게 유전자검사(PCR) 실시

- ▶ 자가검사 양성자는 개별검사 실시(취합검사 하지 않음)

- (발생신고) 조사대상 유증상자(PUI1)로 신고

* (PUI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 (격리조치) 유전자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권고
- (의료폐기물 처리) 자가검사에 사용된 물품 수거 후 안전하게 폐기(양성 시)
- (확진자 조치) 유전자검사(PCR) 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 신고(정정) 및 확진환자 관리 이행

- ▶ 조사대상유증상자 → 확진환자 신고 처리 등 철저 및 확진환자 관리

붙임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관련 안내사항

□ 자가검사 개요

-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은 항원검사방식으로, 개인이 채취한 비강 도말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임
- 사용 가능한 검체는 비강 도말물이며, 검사 결과 양성 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

□ 자가검사 성능

- ▶ 세부 성능은 각 제품별 설명서를 참고

- 검사 원리상 유전자검사(PCR) 대비 정확도(민감도,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를 음성으로 판정) 또는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

-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
-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방역 수칙은 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 자가검사 음성결과로 마스크 미착용, 시설이용 허가 등 방역수칙 완화 목적의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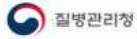
-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PCR 확인검사를 실시
 -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결과가 확인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PUI1)*에 해당

□ 자가검사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것
 - 신속한 유전자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를 할 수 있으나, 검사결과 관계없이 반드시 유전자검사 실시

붙임 14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붙임 15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 분		현 행	조정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 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 가격리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감염 예방

①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받기

②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착용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분과 청운을 얹어 환기하기

③ 대면 접촉 줄이기

• 사회적모임 8인 이내,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조기진단·조기치료

④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심증상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받기

⑤ (일반) 의심증상시 신속병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지역의료기관·자가 신속항원검사영역 시 PCR검사, 확진 시 재택치료

오미크론 대응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 감염병 확산 시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 업무 선정

☑ 핵심 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대체인력 투입 등)과
자원 운용(필수자원 및 현재 비축량 파악 등) 계획 마련

☑ 핵심 업무 담당자 결근(확진/격리) 대비하여 대체근무자 지정 및
우선순위 낮은 업무 축소 등 업무 조정 계획 마련

☑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조직 체계 구성 및 팀별·개인별 역할 규정

☑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내 확산 방지 조치 사항 등 마련

대상자명	증상	1일자	2일자	3일자	4일자	5일자	6일자	7일자	~	14일자	15일자	16일자	17일자	~	종료일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오후	38°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 접촉되지 않은 거주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

서식1-2

시설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예시]

[illegible]

- 66 -

서식2

접촉자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illegible]

서식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____ 요일) ____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 시 설 명: (_____)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 (1)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준수사항(8)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직위: 성명: 연락처:
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외부인 시설 출입관리				
2.3.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관리, 가족에게 안내 (※ 접촉면회 지침 확인할 것)				
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거주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사회복지시설 명 : _____

감사 항목	내용 확인	적합성	부적합	증거 정보
1.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요양보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올바른 손 위생을 따르고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포함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을 수행하며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요양보호사는 관리 기간 동안 거주자 를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출석 시간 과 장소를 통제하고 거주자의 지역을 떠나지 않아 야합니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출입 시간이 있으며, 출입 기간 동안 에는 거주자를 봉사서비스를 하기 위해 증명서 발 급된 자원봉사자만 출입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간 (예 : 아침, 정오 및 저녁) 을 설정합니다. 각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자원봉사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방문시간 을 포함한 기록 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기전에 마스크 를 착용하고 손 위생, 및 기침 예절을 시행해야합 니다.			
3. 요양보호사의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전담 직원은 요양보호사를 위해 매일 온도를 측정 하고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감염과 같은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적 인 추적 및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출근 하지 않습니다.			
4. 요양보호사 감염 관리 교육	손 위생, 기침예절, 개인 보호구 사용, 환경 및 소독 및 기타 관리 조치를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			

* 거주자와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모두 포함

검사관 서명 : _____ 검사 날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참고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 의료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훈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				
	이용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훈운영과			
			◦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 경로당, 노인교실					
아동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과
	이용	◦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장애인	생활	◦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 쉼터	·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 피해장애아동쉼터				
			◦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정책과					
	◦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 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이용	◦ 지역사회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